

2022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2. 12. 22. (목) / 오후2시
2. 장 소 : 명성복지회 법인 회의실
3. 참석임원 : 이사총원 8명(김광용, 윤만규, 최상희, 조정휘, 류호인, 류창현, 차경삼, 전상호)
 참석이사 8명(김광용, 윤만규, 최상희, 조정휘, 류호인, 류창현, 차경삼, 전상호)
 감사 2명(조순일, 위은경) 중 2명 참석 (조순일, 위은경)

4. 성원보고 및 경과사항 보고

김광용 대표이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사회 이사 총원 8명중 8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회의를 진행하다.

5. 안건심의

○ 김광용 이사장 : 1호 - 2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전원이 동의하여 일괄 상정하다.

1) 2022년도 계양노인전문요양원 4차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2) 2022년도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차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상기 의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 김수진 국 장 : 2022년도 한해동안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되었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적극 추진하였다. 1호, 2호 의안을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다.

○ 유호인 이 사 : 원안에 동의 한다. 요양원과 노인센터 2개 시설의 정리추경이고, 소액변경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윤만규 이 사 : 동의에 재청한다.

○ 차경삼 이 사 : 본인도 동의한다.

○ 조순일 감 사 :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다.

○ 김광용 이사장 :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아래의 의안에 원안대로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하다.

구분	세입 (천원)			세출 (천원)		
	2022년도 추경(전)	2022년도 추경(후)	증감	2022년도 추경(전)	2022년도 추경(후)	증감
제1호의안) 계양노인전문 요양원 4차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2,286,014	2,286,590	576	2,286,014	2,286,590	576
제2호의안) 계양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3차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	200,128	200,628	500	200,128	200,628	500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1호-2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 김광용 이사장 : 다음은 3호 - 7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전원이 동의하여 일괄 상정하다.

- 3) 2023년도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4) 2023년도 계양노인전문요양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5) 2023년도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6) 2023년도 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7) 2023년도 명성복지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상기 의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 김수진 국 장 : 제출한 의안자료를 참조하길 바란다.

3호, 4호, 5호, 6호, 7호 의안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다.

주요 세입은 인천시와 계양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2023년도 보조금과 지원금 등의 내시안을 참조하였고, 후원금과 이월금 등을 추정하여 편성하였다. 세출은 시설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 하시기 바란다. 계양복지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된 이유는 2022년도에 2건의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2023년도에도 코로나와 독감 등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산하시설 모두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계획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상희 이 사 : 제출된 원안에 동의한다.

○ 조정휘 이 사 : 재청한다. 찬성한다.

○ 윤만규 이 사 : 본인도 동의한다.

○ 김광용 이사장 :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아래 의안에 원안대로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하다.

구 분	세 입 (천원)			세 출 (천원)		
	2022년도 최종예산	2023년도 예산	증감	2022년도 최종예산	2023년도 예산	증감
3호 의안)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656,755	1,380,308	-276,447	1,656,755	1,380,308	-276,447
4호 의안) 계양노인전문요양원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286,590	2,299,881	13,291	2,286,590	2,299,881	13,291
5호 의안) 계양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00,628	205,863	5,235	200,628	205,863	5,235
6호 의안) 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95,530	218,798	23,268	195,530	218,798	23,268
7호 의안) 명성복지회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83,712	92,600	8,888	83,712	92,600	8,888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3호-7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8) 법인(시설)운영규정 90조, 97조에 따른 별표1, 별표2 심의 건

- 김광용 이사장 : 8호 의안을 상정한다.
김수진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수진 국 장 : 매년 동일한 사항이다. 우리법인(시설)운영규정 90조1항 -별표1, 97조2항 -별표2의 사항에 관한 건이다. 별표1 복지관과 노인센터,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도 인건비 예산안과 2022년도 인건비를 참조하여 편성하였다. 2023년도에 인건비지침이 확정될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요양원은 2023년도 예산서에 첨부된 종사자 인건비 명세표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별표2에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익금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편성되는 기타수당에 관련된 사항이다. 참조하여 심의 요청 드린다.
- 전상호 이 사 : 원안에 동의한다.
- 류창현 이 사 : 재청한다.
- 김광용 이사장 :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8호 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8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9) 계양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별표1 심의 건

- 김광용 이사장 : 9호 의안을 상정한다.
김수진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수진 국 장 : 계양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규정 제11조5항 -별표1, 노인장기요양수가 반영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급여비용표에 관한 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하여 공단에서 매년 변경되어 고시되는 수가를 반영하여 적용 하려한다. 심의 요청 드린다.
- 류호인 이 사 : 원안대로 승인하길 동의한다.
- 윤만규 이 사 : 재청한다.
- 김광용 이사장 :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9호 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9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10)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심의 건

- 김광용 이사장 : 10호 의안을 상정한다.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김수진 국 장 : 지난 9월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시설장 변경 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오래된 운영규정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규정을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우리법인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시설 운영규정을 현행 지침에 맞게 전체적으로 보완 및 수정하였다. 제출된 자료를 참조바란다.
- 최상희 이 사 :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개정한 것 같다. 원안에 동의한다.
- 조정희 이 사 : 제청한다.
- 김광용 이사장 :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10호 의안에 원안대로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한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10호 의안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규정(안) 개정 심의건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11)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심의 건

- 김광용 이사장 : 제11호 의안을 상정 한다. 이 안건은 우리법인 정관 제18조를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다. 절차 등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주길 원한다.
- 김수진 국 장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인 정관 3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린다. 또한, 법인정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의안 자료대로 제18조 제②항,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 변경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 최상희 이 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④항이나 관련지침에도 보궐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고, 연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전상호 이 사 :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본인도 수정에 동의한다.
- 차경삼 이 사 : 본인도 찬성한다.
- 김광용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없어 표결로 처리하기로 말하고, 11호 의안에 원안대로 법인 정관 제18조 제2항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삭제 변경하는 건을 승인하길, 찬성하시는 이사는 찬성에 거수 할 것을 말한다.
- 참석이사 전원 : 찬성에 “예”로 거수하다
- 김광용 이사장 : 제11호 의안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심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포하다.

추가 안건이 없어 의사일정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폐회하다.

위의 경과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이사 전원 인감 날인하다

2022. 12. 22.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이사장 김 광 용



이 사 윤 만 규



이 사 최 상 회



이 사 조 정 휘



이 사 류 호 인



이 사 류 창 현



이 사 차 경 삼



이 사 전 상 호



감 사 조 순 알



감 사 위 은 경

